

특정 사안감사 조사결과 공개

('18.4.19.(목), 감사실)

I, 감사개요

□ 감사목적

- ○○비리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위규 사항에 대한 처분

□ 감사기간 및 인원

- 감사기간 : 17.8.28~12.28
- 감사인원 : 감사실 2명 및 외부감사인 1명

□ 감사범위

- UNIST '스' 등 5건 공사 및 공사감독 업무 등에 관한 사항

□ 감사중점 사항

- ○○○○공사 추진의 적정성 등

II, 감사결과

(단위 : 원)

지적건명	처분요구			비고
	처분종류	재정상조치금액	신분상조치인원	
▶ 불법하도급 업체 제재 통보(○○○○) -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업체가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업체를 신고할 것	경고요구/ 주의요구	-	2명	
▶ 불법하도급 업체 제재 통보 및 건설기술자 현장이탈 제재 통보(○○○○) -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업체가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- 공사현장에 상주해야하는 건설기술자(현장대리인)	통보			4건

지적건명	처분요구			비고
	처분 종류	재정상 조치 금액	신분상 조치 인원	
<p>이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건설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업체를 신고할 것</p> <p>▶ 불법하도급 업체 제재 통보 및 입찰담합 의혹 신고 통보(○○, ○○○○○○○○, ○○○○○○)</p> <p>- 기술제안 입찰 기술평가 대상 업체 간에 입찰담합 정황 및 불법하도급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것</p> <p>▶ ■■■■일지 작성 관련 관리·감독 부적정</p> <p>-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사작업일지를 작성할 때는 공사감독관이 작업내용 일치여부와 현장대리인의 서명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도 공사작업일지에 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, 공사작업일지에는 현장대리인이 아닌 다른 자가 서명하고 공사감독자의 서명도 누락</p>				

※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: 18.4.13.